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62
----------	-----

제출일자 : 1993. 4. 13.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의 폐지('90. 5. 3., 대통령령 제12,999호)와 관련, 설치목적이 달성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 제128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1993. 5. 24.
행정재무위원회

1. 審査經過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 1993年 5月 4日 區廳長提出

나. 回附日字 : 1993年 5月 11日 回附

다. 上程日字 : 第17回 永登浦區議會(閉會中) 第2次 委員會(1993年 5月 24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總務局長 辛金柱)

가. 提案理由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위탁 운영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임용 등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主要内容

-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안 제2조) : 구청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구지회장에 개 위탁
- 운영비 보조(안 제5조) : 구청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구지회장
- 직원임용(안 제6조)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
- 지도·감독체계(안 제7조) : 구청장 및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구지회장 지도·감독

3.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姜性熙)

가. 1993. 5. 4. 영등포구청장이 제정 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동 새마을이동도서관은 당초 저소득주민 거주지역을 순회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주민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며 선진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건전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1985. 2. 6. 시장방침에 의거 서울시의 재정지원하에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에서 주관 운영하여 오던중

나.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자치구별로 소요예산을 확보, 계속 위탁운영하여 오던 것으로 금번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시달된 동조례준칙(안)에 따라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 책의 해를 맞아 독서인구의 확대와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에 의한 계속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자치구 예산(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사원의 임용권과 인건비, 지급기준 등의 책정권은 새마을운동區지회가 아닌 서울시지부에서 관장함은 區자치권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그러나 자치구별로 관장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5인 이상)으로 볼 수 없어 종사원들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원관리 및 급여관리의 통일성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에서 관장함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은 요청 안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64	제출년월일 : 1993. 5.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사유

-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위탁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직원임용등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안 제2조) : 구청장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구지회장에게 위탁
- 운영비 보조(안 제5조) : 구청장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구지회장
- 직원임용(안 제6조)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회장
- 지도·감독체계(안 제7조) : 구청장 및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구지회장을 지도·감독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

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설치·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영등포구지회(이하 "구지회"라 한다) 회장에게 위탁한다.

제 3 조(사업) ①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 등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독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 독서진흥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 ②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제 4 조(운영위원회) ①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지회에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장은 새마을문고중앙회 구지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2. 새마을문고지도자 2인 이상
3.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3인 이상

제 5 조(예산 및 결산) ①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 ②구지회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구지회 회장은 구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운영 최종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구지회 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6 조(직원임용) ①이동도서관 직원은 구지회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이하“지부회장”이라 한다)이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

②이동도서관에는 1대의 차량에 사서와 운전원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을 둔다.

③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 년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구지회 회장의 이동도서관 설치·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이동도서관은 직원임용 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부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지부회장은 제2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지회 회장을 지도·감독한다.

제 8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이동도서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93년도 영등포구청수물품취득동의(안)심사보고서

1993. 5. 24.
행정재무위원회

1. 審査經過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1993年 5月 19日 區廳長提出

나. 回附日字: 1993年 5月 20日

다. 上程日字: 第17回 永登浦區議(閉會中) 第2次 委員會(1993年 5月 24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財務局長 梁大雄)

가. 提案理由

구청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 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므로 최소보유로 인한 업무수행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코자 함.

나. 主要内容

'93. 4. 10부터 전 동에 FAX이용 증계 민원처리 확대 시행에 따른 민원서비스 제공

다. 法的根據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및 제2항

3.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姜性熙)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동의 요청한 '93년도 영등포구청수물품취득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교통이 불편하거나 장거리 거주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3. 4. 10부터 실시하는 전 동FAX이용 증계 민원처리(신원증명,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확대실시에 따른 소요장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시민봉사실의 장비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실정인 바 새로이 모사전송기 2대를 추가 설치함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므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원안 가결

'93년도 영등포구청수물품취득동의(안)

의안 번호	166
----------	-----

제출년월일: 1993. 5. 19.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提案理由

구청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 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므로 최소보유로 인한 업무수행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코자 함.

2. 主要骨子

'93. 4. 10부터 전동에 FAX이용 증계 민원처리 확대 시행에 따른 민원서비스 제공